

충청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0. 2. 1
기획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위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12월 20일
- 회부일자 : 1999년 12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0. 1. 2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승 기)

가. 제안이유

의료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및 비료관리법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권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 사무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건사회 위생분야 관련수수료 신설
 - 종합병원 개설허가 ----- 1건 100,000원
 - 종합병원 개설 변경허가 ----- 1건 50,000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 1건 80,000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개설 변경허가 -- 1건 40,000원
- 문화공보분야 관련 수수료 신설
 - 비디오물·게임물 판매·대여업등록(지정)신청 -- 1건 2,000원

- 비디오물 · 게임물 판매 · 대여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고)- 1건 1,000원
- 시청제공업 · 게임제공업 · 노래연습장업등록(지정)신청 - 1건 20,000원
- 시청제공업 · 게임제공업 · 노래연습장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 종합게임장업등록(지정)신청 ----- 1건 20,000원

- 농수산물관련 수수료 신설
 - 비료생산업 등록 ----- 1건 30,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 ----- 1건 30,000원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만)

-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의료법개정에 따라서 종합병원 개설허가 등의 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병원개설 허가 등 보건사회위생분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비디오물 · 게임물 판매 대여업 등록신청 등 문화공보 관련 분야 수수료 신설과
 -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각각 신설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호) 라목 (3)다음에 (4)내지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마목 (6)을 (3)으로 (7)을 (4)로 하고 (5)내지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야목 (1),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증명 등 수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라. 보건사회위생관계			
(1)~(3) 현행과 같음			
(4) 종합병원개설허가		1 건	100,000
(5)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개설허가		1 건	80,000
(6) 종합병원개설 변경허가		1 건	50,000
(7)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개설 변경허가		1 건	40,000
마. 문화공보관계			
(1)~(2) 현행과 같음			
(3) 종전 (6)과 같음			
(4) 종전 (7)과 같음			
(5) 비디오물·게임물판매·대여업등록(지정)신청		1 건	2,000
(6) 비디오물·게임물판매·대여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고)		1 건	1,000
(7)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등록(지정)신청		1 건	20,000
(8)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고)		1 건	5,000
(9) 종합게임장업등록(지정)신청		1 건	20,000
야. 농수산관계			
(1) 비료생산업등록		1 건	30,000
(2) 비료수입업신고		1 건	2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

(단위 : 원)

현		행		개			정(안)			
구	분	기	요	구	분	기	요	구	분	요
		준	액			준	액			액
라. 보건사회위생관계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설)				(4) 종합병원개설허가		1 건	100,000			
(신설)				(5)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개설허가		1 건	80,000			
(신설)				(6) 종합병원개설 변경허가		1 건	50,000			
(신설)				(7)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개설 변경허가		1 건	40,000			
마. 문화공보관계										
(1)~(2) 생략				(1) 현행과 같음						
(3) 삭제				(2) 현행과 같음						
(4) 삭제				(3) 종전 (6)과 같음						
(5) 삭제				(4) 종전 (7)과 같음						
(6) 각본등사신청				(5) 비디오물·게임물판매· 대여업등록(지정)신청		1 건	2,000			
(7) 출판사, 인쇄소등록및 변경등록				(6) 비디오물·게임물판매· 대여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고)		1 건	1,000			
(8) 삭제				(7)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등록(지정) 신청		1 건	20,000			
(9) 삭제				(8)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 건	5,000			
(신설)				(9) 종합게임장업등록(지정) 신청		1 건	20,000			
(신설)				아. 농수산관계						
(신설)				(1) 비료생산업등록		1 건	30,000			
(신설)				(2) 비료수입업신고		1 건	20,000			

관계법령 (拔萃)

□ 의료법

제 30조 (의료기관의 개설) ① 생략

②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없다.
다만, 제1항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⑥ (생략)

제64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이하 생략)

□ 동법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권한중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의원 또는 치과의원개설허가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이하생략)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①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생략)

② (생략)

③ ('94. 9. 27삭제되어 舊조항 발췌) 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병원개설허가의 경우 5만원
2.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허가의 경우 3만원
3.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신고의 경우 2만원
4.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의 경우 : 1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면허 또는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동법시행규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②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후 종전의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수료) 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3호생략)

②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게임장의 지정신청

③ (생략)

□ 동법 시행령

제11조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② (중략)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서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종합게임장의 지정절차 등) ② (중략) 종합게임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법관련 업무교육 내용 (문화관광부)

영 업 종 류	1건당 수수료		비 고
	등록(지정)신청	등록사항변경 등록 (신 고)	
1. 비디오물, 게임물판매, 대여업	2,000원	1,000원	시·군
2.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20,000 원	5,000원	시·군
3. 종합게임장	20,000 원		도

□ 비료관리법

제 11 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